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1560호
2020년 9월 11일
금요일

규 칙

- 규 칙 제 1 0 3 7 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자체감사 규 칙 등 일부개정규칙 2
- 규 칙 제 1 0 3 8 호 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

회 람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대변인실

규 칙

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

2020년 9월 11일

남동구 규칙 제1037호

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

제1조(「남동구 자체감사 규칙」의 개정)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4호 중 “문서부책”을 “문서·장부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제2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감사결과의 보고일로”를 “감사결과를 보고한 날”로 한다.

제20조제1호 중 “날로”를 “날”로 한다.

제23조 중 “날로”를 “날”로 한다.

제24조제1호 중 “임·직원”을 “임직원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본문 중 “날로”를 “날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규정에”를 “규정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날로”를 “날”로 한다.

제2조(「남동구 제안 규칙」의 개정) 남동구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남동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소속공무원”을 “남동구 소속공무원”으로, “구”를 “남동구”로, “사기양양을 통하여”를 “사기를 드높여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”를 “규칙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구”를 “남동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5조 본문 중 “날로”를 “날”로 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7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3조(「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」의 개정)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”을 “필요한 사항을 규정함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및 제5항 중 “범위 안”을 각각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범위 안”을 각각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사기양양을”을 “사기를 드높이기”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임용일로”를 “임용한 날”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(개)정이유 및 주요내용

□ 제안이유

-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,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로 정비하여 구민의 권리보호 및 법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「남동구 자체감사 규칙」 중 어려운 한자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 : 제1조
- 「남동구 제안 규칙」 중 어려운 한자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 : 제2조
- 「남동구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」 중 어려운 한자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 : 제3조

규 칙

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

2020년 9월 11일

남동구 규칙 제1038호

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50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49조”로,
“같은 법 제51조”를 “같은 법 제50조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50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49조”로,
“같은 법 제51조”를 “같은 법 제5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(개)정이유 및 주요내용

□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(법률 제14474호, 2016.12.27., 전부개정시 조문 변경)

□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정비
 - 수정신고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0조 → 제49조
 - 경정 등의 청구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1조 → 제50조
(제9조제2항, 제11조제2항)